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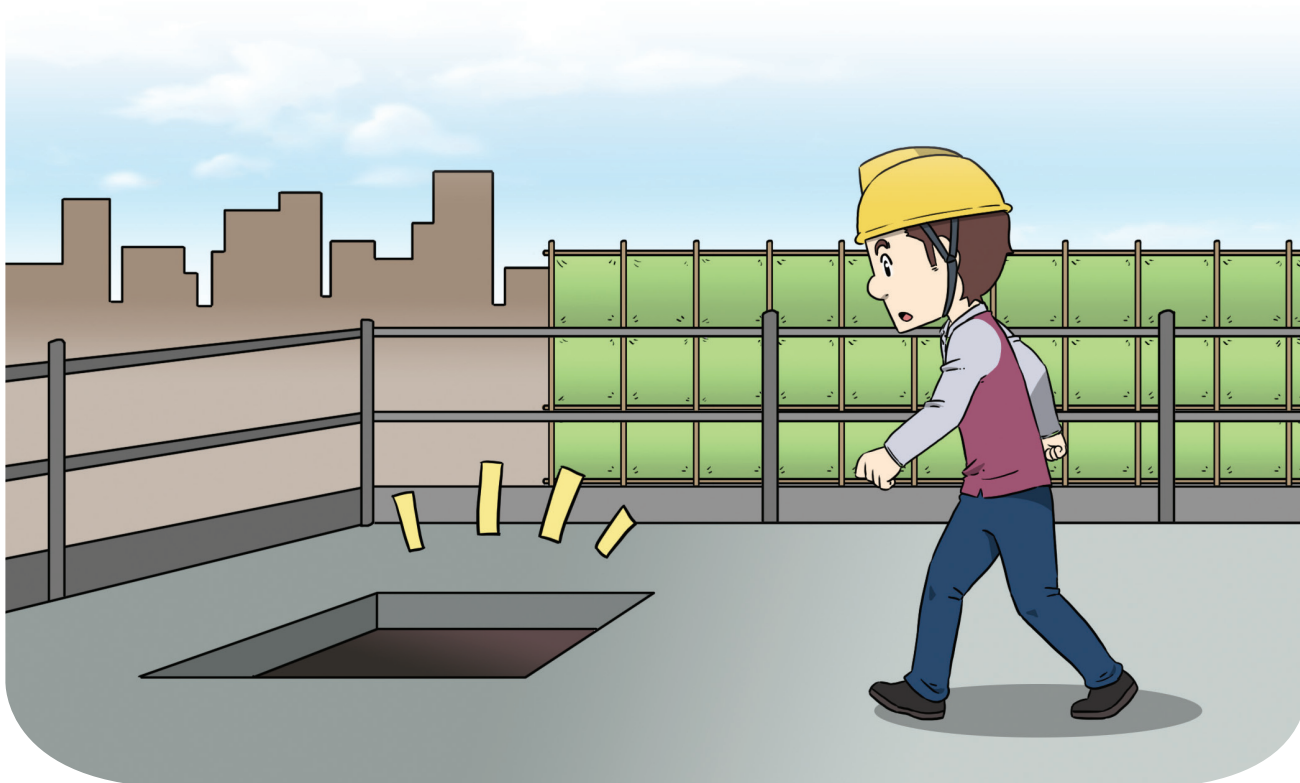
바닥 개구부

opening , 開口部



바닥 개구부란(opening, 開口部)?

바닥에 뚫린 구멍 또는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환기, 통행, 투시 등의 목적으로 바닥에 트인 부분을 말한다.



구조(분류, 종류 등)

- 건물에 일반적인 바닥 개구부는 집수정, 오수정화조, 배수로, 맨홀 등이 있다.



우수맨홀



배수로 그레이팅



집수정





주요 위험요인

- ✓ 보행 중 실족이나 미끄러짐, 헛디딤에 의한 추락
- ✓ 점검 · 보수 · 청소 등의 작업 중 추락

안전대책

- 개구부 덮개 설치
 - 개구부는 상시 덮개를 설치하고 덮개가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하며 위에 개구부 경고표지 설치(필요시, 안전난간대 설치)
- 개인보호구 및 올바른 복장 착용
 - 안전화(필요시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것), 안전모, 안전대(벨트) 등
 - 안전모 착용 시에는 턱끈을 반드시 체결
 - 신발은 구겨 신지 않고, 작업 시에는 슬리퍼 착용 금지
- 작업자 이외에 출입 금지조치
- 야간 통행 및 순찰 · 경비 업무 등을 위한 조명 확보
 - 통행용 75럭스, 일반작업 시 150럭스, 정밀작업 시 300럭스 이상을 확보
 - 고정 형태의 조명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휴대용 조명기기 지참





재해사례 : 집수정 배수상태 점검 중 개구부로 추락

개요

빌딩 내에서 건물관리 용역업체 경비원인 피해자가 순찰 중,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집수정의 배수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구부로 추락하여 익사



발생원인

- 집수정 개구부 덮개를 개방한 채 방치
- 주변에 조명 미설치로 적정조도 부적절

예방대책

- 집수정 개구부는 상시 덮개를 설치하고 미사용 시에는 덮개를 닫아놓은 상태로 유지
- 추락주의 안내표지 설치(개구부 주의 등)
- 집수정 주변 적정조도 확보 또는 휴대용 조명기기 지참





안전수칙

작업 전

- 개구부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다.
- 작업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숙지한다.
-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확인하고 준비한다.
- 작업에 필요한 조명을 충분히 확보한다.

작업 중

- 작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작업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지 않는다.
-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철저히 착용한다.
- 물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개구부 주위를 정리 정돈한다.
-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물기 또는 기름기 등을 제거한다.

작업 후

- 작업완료 후 개구부 덮개를 덮고 잠금상태를 확인한다.
- 개인보호구를 청결하게 세척 · 관리한다.



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3조 (전도의 방지)
 - 제13조 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 - 제32조 (보호구의 지급 등)
 - 제48조 (울타리의 설치)
 - 제8조 (조도)
 - 제21조 (통로의 조명)
 - 제43조 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